

10년동안 받은 최저임금의 결과는 2013년 임금체불?

10년째 최저임금 받고, 임금체불된 차량운전노동자의 눈물을 아십니까?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있지만 차량운전 노동자들의 기본급·식대는 인상은 커녕 10년째 평행선입니다. 부당징계로 노노갈등을 조장하는 팀장들, 임금교섭 대책없는 무능력의 종결자 박은열 사장. KBS손자회사(도급)라 불리는 방송차량서비스의 현실입니다.

**참을만큼 참았습니다.
더이상 배고파서 못살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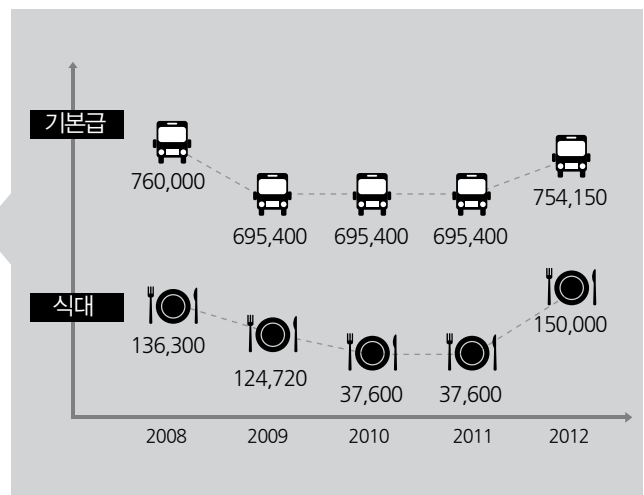
열심히 일하며 회사를 지탱하는 노동자의 생존권 따윈 안중에 없는 사장과 팀장들입니다. 옆에서 노동자는 굶고 있는데도 자신들의 밥그릇만 채우려는 관리자의 파렴치한 행동을 더 이상 참고 인내할 수 없습니다.

박은열 사장과 팀장들은 노동자의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지지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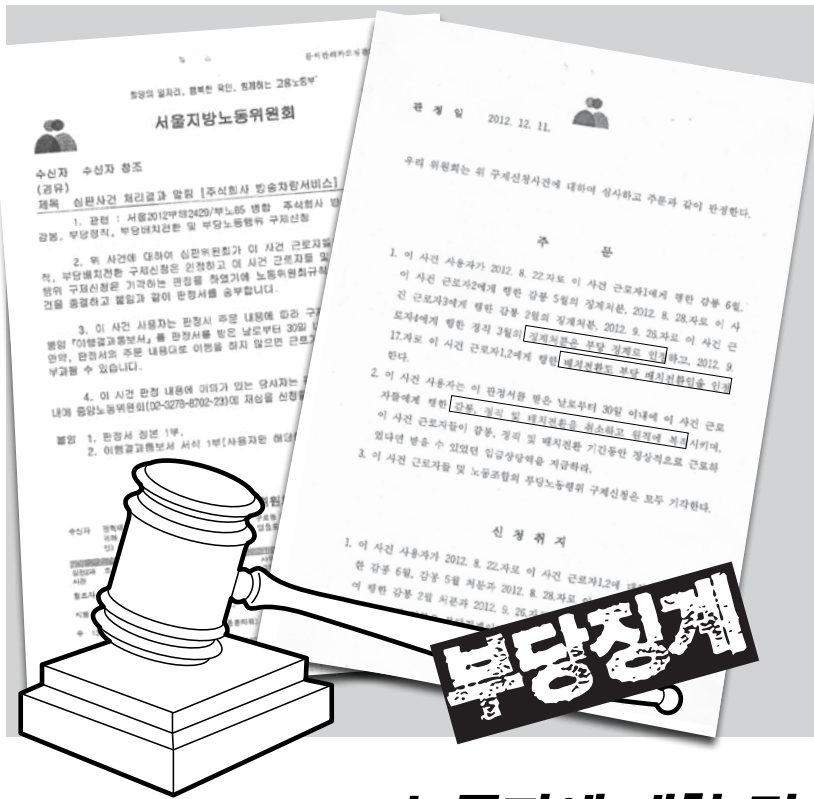
임금변동상황

년도	기본급	식대	변동사항
2008	760,000	136,300	
2009	695,400	124,720	임금 15% 삭감
2010	695,400	37,600	식대 87,000 삭감
2011	695,400	37,600	동결
2012	754,150	150,000	식대복원 임금동결 주장 (교섭중)
2013	최저임금 체불 / 최저임금법 위반		



노동위원회도 인정했다! 부당징계 철회하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결문 내용 발췌 자료



1. 이 사건 사용자가 2012. 8. 22.자로 이 사건 근로자1에게 행한 감봉 6월, 이 사건 근로자2에게 행한 감봉 5월의 징계처분, 2012. 9. 26.자로 이 사건 근로자4에게 행한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은 부당 징계로 인정하고, 2012. 9. 17.자로 이 사건 근로자 1,2에게 행한 배치전환도 부당 배치전환임을 인정한다.
2. 이 사건 사용자는 이 판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행한 감봉, 정직 및 배치전환을 취소하고 원직에 복직시키며, 이 사건 근로자들이 감봉, 정직 및 배치전환 기간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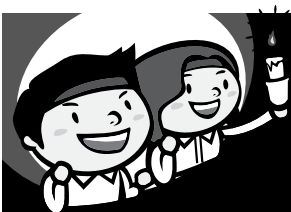
노동자에 대한 징계의 부당성을 인정하라! 박은열 사장은 부당징계 즉각 철회하라!

작년 7월 1일 (주)방송차량서비스 박은열 사장이 취임한 후 회사측은 2012년 8월 22일부터 9월 17일까지 총 4건의 징계를 감행했습니다. 우리 노동조합은 징계에 대한 철회를 요구하였으나 회사측은 조합의 요구를 묵살하였습니다.

징계에 대한 부당함을 호소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했고, 2012년 12월 21일 부당징계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회사는 이를 인정하지 않으며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2013년 2월 20일 또다시 부당징계라는 판정을 내렸습니다.

노동자들에게 가한 감봉, 정직 및 배치전환은 명백한 불법 행위입니다. 회사측은 이제 그만 부당징계의 잘못을 인정하고 노동위원회 판결과 같이 노동자의 지위와 권한을 회복시켜야 합니다.



민주노조 건설에 동참할 동지를 초대합니다.

전화 (02-6099-7585)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하겠습니다.